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되, 자동차 등 재활용 여건이 현저히 다른 일부 제품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 시뿐만 아니라 2차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25. ~ 11. 4., 2025. 3. 28.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환경 위해 방지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를 “산업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1의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제작할 때 장착되어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6.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8. 그 밖에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인 폐전기·전자제품과 현저히 다른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2. 태양광 패널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제15조의3제1항 중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패널”로 한

다.

제15조의5 본문 중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제3호 중 “제14조 및 별표 3”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중 “이동전화단말기의”를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4 제1호 중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각각 “별표 3 제3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4) 중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를 “위반행위자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

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전기
· 전자제품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
(제14조제2항 관련)

제품군	세부 분류
1. 온도교환기기 등	가.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전기·전자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별표 5]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1. 온도교환기 기 등	가.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kg당 470원	kg당 155원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 기안마기	kg당 480원	kg당 122원
2. 일반 전기 · 전자 제 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kg당 611원	kg당 174원
	나. 이동전화단말기	kg당 4,123원	kg당 3,413원
	다. 통신·사무기기(이동 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kg당 811원	kg당 166원
	라. 그 밖의 일반 전기· 전자제품	kg당 950원	kg당 156원
3.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u>별표 1에 따른 제품</u>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 ----- ----- ----- ----- <u>직류(DC) 1 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 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 들어진 전기·전자제품</u> ---. --- -----.
1. <u>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송수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 <u>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 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 <u>호에 따른 궤도</u> 다. 「해사안전기본법」 제3 <u>조제2호에 따른 선박</u>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 <u>호에 따른 항공기</u> 1의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u><신 설></u>	

2. (생략)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신설>

<신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 비행체

2. (현행과 같음)

3. 산업기기 -----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제작할 때 장착되어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6.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	<u>다. 이하 같다]</u>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8. 그 밖에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인 폐전기·전자제품과 현저히 다른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2. 태양광 패널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	---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2. (생략)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 제14조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

--- 태양광 패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

-----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단서 삭제>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 (생략) 3. <u>제14조 및 별표 3</u>에 따른 회 수 · 인계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 전자제품의 범위: 2022 년 1월 1일 4. ~ 7. (생략)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4조제1항</u>----- ----- ----- ----- 4.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연 락 처	(044) 201 - 7399